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참여연대) 준비위원회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 796-8364(대표전화), 796-8365, 796-4108/9 팩스 : 796-8366 Hitel/PC Serve-ID : rights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보도국

내용 :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성명서

일시 : 1994년 9월 8일

쪽수 : 3 쪽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우리의 의견

- 대통령 및 국회에 바란다.-

오는 9월 15일이면 헌법재판관 9명중 7명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지난 6년간의 활동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국가기관의 적법한 권한행사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뒤이어 이번에 새로 임명될 헌법재판관들은 기왕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한층 기본권 신장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문민시대, 민주화와 시민참여의 시대에 부합하는 절차를 거쳐 높은 신분과 전문지식을 가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일주일도 체 남지 않은 시점에서 참으로 많은 문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에 새로 창립되는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는 법전문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행하고 지난 9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을 위하여 특별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대통령과 여야 정당들은 헌법재판관 후보명단을 즉각 공개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모든 국민과 여론의 관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임하는 헌법재판관의 명단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1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명단조차 공개되지 않는 것은 여론의 검증을 피해 기습적으로 임명하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통령과 여야 각당이 헌법재판관의 후보 명단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우리는 밀실로비에 의한 헌법재판관 인선을 반대합니다. 공개된 후보 명단에 대해 전문가 단체와 여론의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의 인선과정이 전혀 노출되지 않아 국민들은 어떤 분들이 거명되고 있고, 어떤 논의를 거쳐 재판관 후보들이 결정되는지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밀실인사로 인한 부작용은 그간 여러번 체험된 바 있습니다. 현재의 방식대로는 대통령이나 고위당직자와 가까운 인사, 밀실로비 능력이 뛰어난 인사들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밀실로비에 의한 재판관 선정을 단연코 반대합니다. 대통령과 여야 정당은 즉각 재판관 임명 후보자의 명단과 선정사유를 공개하고 전문가단체와 일반여론의 검증을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3.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인권보장에 의한 의지와 전문적 역량을 가지고 국민적 공감을 갖는 인격과 실력이 겸비된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투철한 의지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견해차를 포용할 수 있는 철학관, 정책관을 지녀야 하며, 인격적인 결함이 없는 분들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언론에서 거명되고 있는 인사들을 보고, 우리는 착찹함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정치적 충립성을 유지하지 못했던 인사나 권위주의적 체질을 지닌 인사들이 헌법재판관으로 다시 거명되는 것은 다시 한번 국민을 모욕하는 처사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헌신한 인사, 시민의 인권신장을 위해 헌신한 인사, 탁월한 전문적 식견을 지닌 인사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4.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국회동의 이전에 인사청문회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헌법재판소장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헌법전문가들은 현행법상으로도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국회의 인준청문회가 가능하며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설문조사 결과: 인준 청문회 불필요 5.8%, 필요 94.2%). 따라서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절차를 짚기 위해 사전에 인준청문회가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장에 추천될 분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같은 절차는 정확한 투표권행사의 필수적인 전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인준청문회를 거치는 것은 일반국민들에 대해 도덕성 회복을 요구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인준청문회를 상설화함으로써 도덕적, 사회적인 비리인사가 앞으로는 주요공직을 맡을 수 없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5.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자의 문호를 개방하고, 재판대상을 확대하여 헌법재판소를 명실공히 최고의 정책법원, 최고의 헌법수호기관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현재의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재판대상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이 그간의 경과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학계와 실무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최소한 다음사항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률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현행처럼 법관자격자로 한정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입니다. 현행 제도는 비교법적으로도 달리 예가 없을 뿐 아니라, 헌법해석에도 문제를 초래하고, 대단히 협소한 시각에서의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경력 15년 이상의 법학교수에게도 헌법재판관 자격을 인정해야 하며, 나이가 비법률적 전문가에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설문조사 결과:법관자격자로 한정 15.1%, 자격범위 확대 84.9%).

둘째, 헌법소원의 대상 가운데 법원의 재판을 포함시켜야 합니다(설문조사 결과:현행 대로 38.4%, 법원재판 포함 60.4%). 많은 민주국가의 헌법재판의 대상에서 법원 재판이 빠지는 예는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최후의 인권수호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고려하면, 법원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별첨1>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문조사

<별첨2>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 자료집)

- 헌법재판소의 기능 및 역할과 시민참여의 관계
- 헌법재판관 선출방법과 문제점
-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성향 분석